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86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첨부 :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도시계획제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 1973. 07. 01 조례 제7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 도시계획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지구) 이 사업지구는 부천 ○ ○ 동으로 고시한다.

제4조(사업목적)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 지목변경, 형질의 변경, 공동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 사업을 시행한다.

제5조(기본면적) 환지의 기준이 될 토지의 면적은 1969년 5월 30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리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1969년 5월 30일이후에 신규등록 분할 또는 병합한 토지는 그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합된 날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

제6조(사업비) ①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때에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②전항의 수익자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토지가격의 평정) ①토지구획정리전 및 정리후의 토지가격 평정은 위치, 형상, 고저, 건설, 면적, 지가, 교통의 편리 수익성 및 환경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가격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면적을 표준으로 하여 종전의 위치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서 교부한다.

②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나 체비지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한 환지는 감량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2(환지예정지 측량등) ①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을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각종 측량과 측량도 교부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부천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③전 제1항의 측량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측량대행) ①시장은 측량사 자격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사무 및 책임한계 대행 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환지 예정지 지정) ①시장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관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 지정을 변경 또는 개정하였을 때에는 또한 같다.

제10조(금전청산) 정리전의 토지 면적 또는 평정가격이 근소하여 일택지로서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1조(청산기준)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 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권리 금액이라 함은 권리 면적에 종전 면적의 정리후 토지 평정 가격 단가를 승한 액으로 한다. 전항의 권리 면적이라 함은 표준 면적에서 부담 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제12조(공공용지)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각필의 부담면적은 종전의 위치에서 당해 토지의 정리전 및 정리후에 평정가격과 설계도로의 복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일정 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분할징수) ①법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분할징수 또는 교부할 때에는 년 1할 2푼의 금액을 이자로 징수 또는 교부한다.

②전항의 분할징수 또는 교부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연체액이 있을 경우엔 년 5푼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4조(체비지매각) ①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체비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 토지의 위치면적 처분방법 기타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체비지 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계년도) 이 사업의 회계년도는 부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6조(통지) 토지구획정리를 필요하였을 때에는 환지설명서의 초본을 지가배부시에는 초본을 첨부하여 관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대리인신고) 시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청산금의 납부 및 수령서류의 송달 또는 기타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보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